2014년 9월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9월25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
중소기업청
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종찬 과장(042-481-4416), 최종영 사무관(4421), 임소현 주무관(4420)

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, 전문엔젤 1호 탄생!

– 이택경 · 류중희씨 등 11명에게 전문엔젤 확인서 발급 –

□ 창업기업은 궁극적으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(IPO)하거나 글로벌 대기업에 인수합병(M&A) 시키는 꿈을 꾸듯이 **수많은 창업기업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꿈**을 가지고 있다.

□ 중소기업청(청장 : 한정화)은 창업기업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**'걸어 다니는 벤처확인 기관'인 '전문엔젤 1호 탄생'**을 알리면서, **이택경·류중희씨 등 '총 11명에게 전문엔젤 확인서'를 교부**하였다고 밝혔다.

○ **이택경**(다음 공동 창업자,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대표), **류중희**(올라웍스 창업, 한국인 최초로 인텔에 M&A), **강중길**(엔젤조합 1호 결성, 2대째 엔젤) 등 **유명 전문 투자자 11명이 전문엔젤로 확인**을 받았으며,

○ 앞으로 이들 **11명에게서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들은 벤처기업**으로 확인(요건 : 5천만 원이상 투자+자본금의 10% 이상)이 되어 법인세·재산세·취득세 등 **각종 세제혜택**과 신용보증 등 **정부정책에서 우대**를 받게 된다.

* '전문엔젤 세부 명단' 및 '벤처기업들의 주요 혜택'은 첨부 참조

○ **현행 벤처확인기관**은 공공기관인 **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2개**와 벤처펀드를 조성·투자하고 있는 **벤처캐피털(VC)들 뿐**이기 때문에 **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들이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은 처음** 있는 일이며, **벤처업계에서는 매우 신선한 제도라고 평가**하고 있다.

○ 11명의 전문엔젤이 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**총 19억 8,700만원으로 1명당 평균 1.8억원을 투자**한 것이며, 이는 **엔젤 중 상위 10% 이내에 해당**하는 것이다.

□ 전문엔젤로 지정된 **이택경씨는** "전문엔젤에게 주어지는 좋은 혜택과 권한을 잘 활용하여 **가능성이 높은 창업팀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.**"고 했고,

○ **류중희 전문엔젤**은 "**전문엔젤제도 덕분에 스타트업들이 엔젤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혜택도 받게 되었다.** 앞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**멘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**하겠다."고 했으며

○ **강중길 전문엔젤**은 "약 15년간 개인엔젤투자가로 활동하면서 **아쉽고 부족하였던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**되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**강한 부담감**을 느낀다. **더욱 더 적극적인 엔젤투자**를 하여 창조경제 근간을 이룰 벤처창업 활성화에 매진하겠다."라고 **전문엔젤로서의 포부**를 밝혔다.

□ 전문엔젤 제도는 **'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'의 국정과제**와 '13. 5. 15. 발표한 「벤처·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」을 통해 추진되었으며,

○ '00년 5천억 원이 넘던 **엔젤투자 규모가 '11년 1/10 수준으로 급감**함에 따라 **엔젤투자를 리드**할 수 있는 전문 엔젤투자자를

발굴·육성해야 한다는 배경으로 **도입**되었다.

* 엔젤투자 규모(억원) ('00) 5,493→('03) 3,031→('07) 897→('10) 341→('11) 428

□ 전문엔젤이 되기 위해서는 **최근 3년간 신주 또는 지분 투자 형태로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**이 있어야 하고,

○ **동시에** 상장법인의 창업자,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등 창업기업을 **멘토링 할 수 있는 경력요건**을 갖추어야 된다.

* 세부 요건 :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

○ 전문엔젤의 **유효기간은 2년**으로 동기간이 지나면 투자실적 등 **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지정여부가 결정**된다.

□ 전문엔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'이 개정되어('14.7.15.) **시행된 지 불과 2개월에 불과**하지만,

○ **11명의 전문엔젤이 지정**되고, **전문엔젤이 되고자**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**엔젤들이 44명에 이르고 금년 중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도 11억 원**에 이르는 등 전문엔젤제도에 대한 **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** 편이다.

□ 정부는 전문엔젤 제도를 **더욱 활성화**하기 위하여 **전문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과 전문엔젤들에 대한 지원**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.

○ **(기업 지원) 전문엔젤들이** 발굴하여 **투자를 한 창업기업**들에게는 R&D·해외마케팅비 등 **최대 5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***할 계획이며 **10월 초 지원계획을 바로 시행**할 예정이다.

< 전문엔젤 투자기업에 대한 R&D 등 연계지원 계획 >

	지원 요건	지원금액
R&D 지원	전문엔젤 투자 기업(창업 3년 이내 또는 7년이내이면서 매출 15억원 이하)	· 1년간 최대 2억원 (전문엔젤 투자금액의 2배 이내)
엔젤 펀드	〃	· 최대 2억원 · 지분율 희석을 감안, 해당기업에 콜옵션 권한 부여
해외마케팅	〃	· 2년간 총 1억원

○ **(전문엔젤 지원) 전문엔젤들에게**는 **정부의 엔젤펀드 지분에 대해 저가매입권(콜옵션)을 70%까지 부여**하여,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,

- **투자금액의 회수**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**엔젤투자자의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 100억 원을 '15년도에 조성**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**금년 중에 엔젤투자 금액 중 1,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공제를 100%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**할 예정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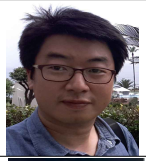
○ 엔젤투자 동향에 대한 **면밀한 모니터링**을 통해 **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과감히 조치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 첨부 > 1. 전문엔젤 11명 명단
2. 벤처기업 지정시 혜택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최종영 사무관(☎ 042-481-44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첨부 1] 전문엔젤 11명

No.	성명 / 소속 / 직위		주요약력
1		**이 택 경**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대표	• ㈜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• 프라이머 공동창업/파트너
2		**류 중 희** 퓨처플레이 대표	•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• ㈜올라웍스 창업 및 인텔에 매각 •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파트너
3		**김 철 환** 카이트창업가재단 이사장	• ㈜이미지앤머티리얼스 창업
4		**최 영 준** ㈜sga 부회장	• ㈜어드벤텍테크놀로지(現 sga)창업(코스닥 상장)
5		**우 원 명** 엔젤투자자	• ㈜KTB network 투자팀장 • SL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이사 • ㈜한국투자관리 상무
6		**박 형 무** 동국대 전자공학과 교수	• 일본NEC중앙연구소 초빙연구원 • ETRI 반도체연구단 연구소장
7		**전 영 진** HB인베스트먼트 전문위원	• 삼성전자(주) • 무한기술투자(주) 이사
8		**강 수 현** 한국투자관리(주) 대표	• (주)스마일게이트 이사 • 윈포스 대표
9		**강 중 길** 대덕벤처파트너스 대표	• 한밭엔젤투자조합, 테크노엔젤투자조합 등 운영 • 구룡산전, 비엠텍, 스타V-Ray 등 창업
10		**강 달 철** 브라더스엔젤클럽 총무	• 레드썬 대표 • 한신공영 설계견적팀 팀장
11		**성 승 용** 브라더스엔젤클럽 총무	• ㈜엔조이플러스 본부장 • 엔플러스일호사모펀드 본부장

[첨부 2] 벤처기업 확인시 혜택의 주요내용

○ 벤처기업 확인시 기업에 세제지원 및 R&D 우대 등의 혜택

-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(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)에 대해 법인세(또는 소득세) 및 재산세를 5년간 50% 감면
-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
- 평가우대 등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
- 그 외 병역특례 우대 및 교수·연구원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·겸직 허용 등

○ **세부 지원내용**

구분	지원 제도	비고
세제	• 법인세·소득세 : 벤처확인(창업 3년 이내)후, 5년 이내 50% 감면	조특법
	• 취득세·등록면허세 :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면제	조특법
	• 재산세 :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50% 감면	조특법
	•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·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 비과세	소득세법
	•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	조특법
	•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	조특법
	• 벤처기업 주식(출자지분) 거래나 평가로 인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	소득세법
창업	• 교육공무원·연구원의 창업·겸임 시, 3년간 휴직허용(1회 연장)	벤특법
	• 현물출자에 산업재산권 포함 및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	벤특법

자금	•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,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감면 등)	벤특법
	• 창투사 투자 대상에 벤처기업 업력 제한 없음(일반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기업)	창업법
	•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우대(자본금,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양 적용, 업력·부채비율 적용 면제)	코스닥
기술	• KOSBIR 프로그램 우선 지원	촉진법
	•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·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	특허법
	•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 참여자격 우대	항공법
입지	•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(교육·연구원의 3000㎡ 이하 실험실 공장등록)	벤특법
	• 산업기술단지내 벤처기업집적시설 허용	산업법
	• 국공유재산 매각, 개발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등 5개 부담금 면제(벤처기업집적시설 특례)	벤특법
M&A	• 전략적 제휴를 위해 임의적 주식교환 허용(부분주식 및 자기주식 교환 허용)	벤특법
	•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(20일→10일내)	벤특법
	• 합병절차 간소화(채권자 이의제출기간,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및 주총통지기한 단축)	벤특법
인력	• 발행주식 50%까지 임직원, 외부인력, 피인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 가능	벤특법
	• 연구전담요원 2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(일반기업은 5인)	촉진법
	•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연 2회 부여(일반기업은 1회)	병역법
기타	• 방송광고비 70% 감면(광고공사)	지침